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구 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 거
권소가 표시 금지	사업자 (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당 없음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의류 등 279개 품목	· '99년 최초 도입(12종) · 확대('04 32종→'10 279종)	소비자 기본법 제12조

-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 품목 선정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 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 표시방법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소가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됨



판매가격 표시

구 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 거
판매 가격 표시	판매업자	· 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



단위가격 표시

구 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 거
단위 가격 표시	판매업자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제외)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3개 품목	· '99년 최초 도입(15종) · 확대('04 33종→'09 83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0 ,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 품목 선정기준 : 상품의 용량, 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 00g당 가격 000원 등).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별도 표시 가능(예 :

품목	내용량	100g당 가격(원)	판매가격(원)
△△ 설탕	500g	1,060	5,300



단위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대상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구 분	가 공 식 품	의 류	가 전 제 품	기 타
총 279종	(4종)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전 품목	(14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구 분	가 공 식 품	일 용 잡 화	신선식품
총 83종	(61종) 햄류(10g), 우유(100ml),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ml), 참기름(10ml), 마요네즈(100g), 간장(100ml), 맛살(100g), 식초(10ml),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ml), 고추장(100g), 된장(100g), 주스(100ml), 소스류(100ml), 케첩(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맛김(장),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ml), 아이스크림류(10ml),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100g), 베이컨(100g), 소세지(100g), 냉동식품만두(100g), 젓갈류(10g), 액젓(10ml), 차류(10g), 과실음료(100ml), 청량음료(100ml), 코코아(10g), 인스턴트분말크림(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100g), 마가린(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0ml), 와인류(100ml), 생선통조림(100g), 생수(100ml), 주류(100ml), 드레싱류(100ml), 건어물(100g)	(19종)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 유연제(100ml),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ml), 린스(100ml), 주 방세제(100ml), 칫솔(개), 치약(10g), 껍티슈(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 누고체(100g), 세탁비누액체(100ml), 합성세제액체(100ml)	(3종) 농산물(100g), 수산물(100g), 축산물(100g)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20	30	100	300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 가격표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02-2110-5142), 각 시·도 및 시·군·구 경제정책과